

2021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추가공모 공고**

2021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9.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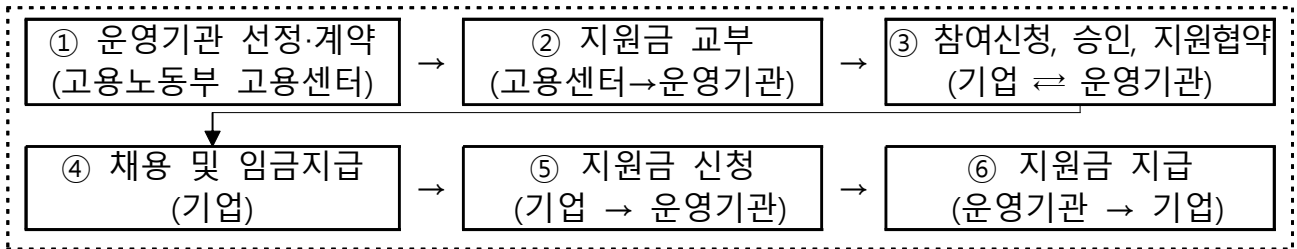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 단,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 지원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 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기업이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 상한)
 -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지원수준)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지급 (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10만원) 추가 지원

<지원금 지급수준>

월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 (추진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2 사업위탁 관련 주요내용

- 위탁규모 : 6만명('21년도 추경예산)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지원금 정산 완료 시까지
- 위탁내용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모집
 -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지원
 -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반환
 -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지침 및 기타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위탁 사업지역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기관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사업지역으로 설정
 - 제1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제2권역(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3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위탁운영비

- (기본운영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1인당 20만원
- (성과급) 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조기 전환시 1인당 10만원, 빅데이터 유형 채용 시 1인당 5만원, 청년 창업 기업에 채용 시 1인당 5만원 등
- (지급방식) 사전에 2회 분할 지급하되, 사업 종료 후 정산

※ 위탁운영비 지급기준 등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기관도 물량을 추가하여 신청 가능(제반서류는 신청 시점에 맞춰 다시 제출해야함)

①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③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

* 다만, 주된 사업자는 사업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함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① '21.4.19.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①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 ② '21.4.19.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신청규모 : 운영기관별 최소 200명 이상 위탁신청

○ 제출서류 : ①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0부 또는 ②신청서 원본 1부 및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8개 대표청은 제출서류 형식을 위 ① 또는 ② 중에서 선택하여, 지청에도 같은 형식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안내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광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3. 29.(월) ~ '21. 4. 13.(화) 18:00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접수

5 선정절차

- (심사)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게재 병행
- (위탁약정 체결) 고용센터-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6 특화분야 운영기관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각 중앙부처에서 특화분야 수행기관으로 추천한 특정 기관·협회·단체
- 신청규모 : 각 중앙부처와 사전에 협의된 인원
- 제출서류 : 일반분야와 동일함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일반분야와 동일함

7 문의처

-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 (단 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컨소시엄)

기 관 현 황 (주사업자)	기 관 명		법 인 등 기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F A X)		관 리 책 임 자 (E - m a i l)	
	직 업 소 개 업 신고(등록) 여부	☐ 무료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기 관 유 형	☐ 비영리 ☐ 영리	사 업 신 청 분 야	☐ 일반 ☐ 특화
기 관 현 황 (보조사업자) *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기 관 명		법 인 등 기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F A X)		관 리 책 임 자 (E - m a i l)	
	컨 소 시 엄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비 율 (위탁비 기준)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등)
---------------	---

[첨부 1-1]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 각각 작성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 청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요 사 업 내 용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분 야 별 매 출 액					
- ○ ○ 분 야					
- ○ ○ 분 야					
자 기 자 본 비 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
	총괄 책임자							
	등록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목표

- ※ '21년도 목표인원(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 *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은 추가 목표인원 제시

2. 사업 내용

- ※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안내·홍보, 참여자(기업, 청년) 발굴·모집, 상담·지원, 사업 신청 접수·적격 여부 심사, 지원금 신청·지급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기업 발굴·모집·확보 방안, 적정 상담 등 채용지원,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구 분 \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 인건비 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 경비 소계			
국내 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 계			

※ <총사업예산> ① 기본운영비는 목표인원×20만원, ② 성과급은 목표인원의 최대 230%(정규직 전환<채용>시, 청년창업기업 채용시, 빅데이터 유형시 등) x 5만원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1.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0년	■ ■ ■
2019년	■ ■ ■
2018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4-2. 해당 분야의 전문성 * 특화분야 신청 운영기관만 작성

구분	사업 수행 전문성
	■ ■
	■ ■

※ 해당 분야(산업 등)의 구인처 보유·관리 현황 등, 사업운영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 ○ 기 관 심 사 표

기 관 명			
총 직원수/ 전담직원수		신청인원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기업·청년)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인적자원 운용 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 (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총 계		

평가자: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참여자 모집 실적, 취업률 등)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등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자 발굴·모집의 전문성, 상담 및 관찰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 매체 등) 활용, IT 분야 맞춤 홍보 전략,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주기별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처리, IT직무 재직 여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청년의 디지털 역량 향상 촉진 등 참여자 관리 방안
인적자원 운용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의 적정성,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관기관 과의 협력(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협업,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비 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특화)

○ ○ 기 관 심 사 표

기 관 명			
총 직원수/ 전담직원수		신청인원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 능력 (30점)	해당 분야의 전문성 (3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기업·청년)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인적자원 운용 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 (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총 점		

평가자: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특화)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30점)	해당 분야의 전문성 (30점)	·해당 분야(산업 등)의 구인처 보유·관리 현황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홍보 수단(자체인터넷, 홍보매체 등) 활용, IT 분 야 맞춤 홍보 전략,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주기별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처리, IT직무 재직 여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 참여자 관리 방안
인적자원 운용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의 적정성,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관기관 과의 협력(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비 고		